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자동확산소화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- 가. 방출구 재질(KS D 6006, 6763, 5101 동등 이상) 규정 (안 제6조제1호)
- 나. 밸브 나사부 최소 두께(2.0 mm 이상) 도입 (안 제7조제7호)
- 다. 지시압력계 시험기준 강화 및 신규 도입
 - 파열강도시험(충전압력 6배, 1분) 도입 (안 제12조제7호)
 - 방수시험(염수분무시험후 2시간 침지) 도입 (안 제12조제8호)
- 라. 소화약제 시험기준 완화, 강화 및 신규 도입
 - 중탄산칼륨 함량(92 → 90wt% 이상) 완화 (안 제15조제2항제2호나목)
 - 흡습율시험 시험일(4 → 20일) 강화 (안 제15조제2항제4호)
 - 수소이온농도 중성화 범위(pH 6~9) 규정 (안 제11조제3항제7호, 제4항제4호)
- 마. 기밀시험 상·하한 온도반복(3 → 5 cycle) 강화 (안 제17조제2호)
- 바. 30일 보존시험(50 ℃, 30일 후 방사시험) 도입 (안 제18조의2)
- 사. 내식시험 시험기준 강화 및 신규 도입

- 황동밸브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(10일) 도입 (안 제21조제5항)

아. 합성수지노화시험(공기가열 180일, 약제노출 210일, 내후성 30일) 도입
(안 제21조의2)

자. 가압용가스용기 자동확산소화기 측 부착부위 치수 및 허용공차 추가 (안
별표 8)

차.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등 추가 (안 별표 9)